

‘안전으로 고객사랑, 서비스로 고객감동’
 대구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 모집공고

2017년도 대구도시철도공사 신입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I 채용개요

1. 채용규모

가. 채용직급 : 8급, 9급

나. 채용인원 : 78명

(단위 : 명)

구 분	직 종	채용 직급	합 계	사무	차량 검수	차량 운영	전기	기계	신호	통신	전자
공개경쟁		9급	47	26			8	5	1	3	4
경력 (자격) 제한경쟁	도시철도 경력직	8급	5	2	1				1		1
	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소지자	9급	19		8	11					
	장 애 인	9급	5	3	1	1					
	기능인재	9급	2				1	1			

※ 구분·직종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미달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인은 동일직종 비장애인 분야에서, 기능인재는 공개경쟁 분야에서 추가 채용합니다.

다. 분야별 주요 담당업무

직 종	주 요 담 당 업 무
사 무	일반사무 및 고객센터(역 근무) 관련 업무
차량검수	전동차 정비 및 3호선 경전철 열차운행 관련 업무
차량운영	열차운전 관련 업무
전 기	전기설비 유지관리 업무
기 계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신 호	신호설비 유지관리 업무
통 신	통신설비 유지관리 업무
전 자	역무자동화설비 및 승강장안전문 유지관리 업무

2.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원서접수	2017. 4. 18 ~ 4. 25	채용홈페이지 이용 온라인 접수 ※ 경력직, 기능인재는 서류접수 동시실시
경력직 서류심사	2017. 4. 28(금)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5.11)
필기시험 장소공고	2017. 5. 8(월)	채용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기시험	2017. 5. 14(일)	해당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7. 5. 22(월)	채용홈페이지 공고
서류접수	2017. 5. 23 ~ 5. 25	필기시험 합격자 해당 ※ 경력직, 기능인재 제외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7. 5. 29(월)	채용홈페이지 공고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2017. 6. 1 ~ 6. 2	서류심사 합격자 해당 ※ 세부적인 일정은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7. 6. 8(목)	채용홈페이지 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불합격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구 분	자 격 내 용
연 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1958. 1. 1 ~ 1999. 12. 31 출생자)
병 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전일까지 전역예정자 ※ 기능인재는 병역제한 없음
지 역	▶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017. 1. 1 이전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2017. 1. 1 이전까지 대구·경북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자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교번) 근무가 가능한 자 ※ ‘야간 및 휴일근로 동의서’ 제출 후 임용 가능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공개경쟁분야

구 분	자 격 내 용														
공인영어 능력시험	▶ 기준점수 이상 취득시 응시자격 부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TOEIC</th> <th>TOEIC-S</th> <th>TEPS</th> <th>TEPS-S</th> <th>TOEFL</th> <th>OPic</th> </tr> </thead> <tbody> <tr> <td>기준점수</td> <td>600점</td> <td>110점</td> <td>482점</td> <td>42점</td> <td>68점</td> <td>IM1</td> </tr> </tbody> </table>	구 분	TOEIC	TOEIC-S	TEPS	TEPS-S	TOEFL	OPic	기준점수	600점	110점	482점	42점	68점	IM1
	구 분	TOEIC	TOEIC-S	TEPS	TEPS-S	TOEFL	OPic								
기준점수	600점	110점	482점	42점	68점	IM1									
※ 시험성적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의 환산기준표를 적용하여 TOEIC점수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u>2015. 3. 15 ~ 2017. 4. 25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u>															

※ 경력(자격)제한경쟁분야는 공인영어능력시험 성적제한 없음.

다. 경력(자격)제한경쟁분야

구 분	자 격 내 용																						
도시철도 경력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예정직에 상응한 도시철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대상 : 철도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도시철도 위탁운영기관, 도시철도 위탁역(사무분야) 																						
차량검수 차량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장 애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모집직종 관련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 ※ 차량검수, 차량운영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기능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소재 기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학교 :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의 채용예정 직종과 관련된 기술·기능학과가 설치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학교 ○ 추천학과 : 채용예정 직종 관련학과(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추천인원 : 학과별 최대 2명, 학교당 3명 이내 (추천당시 학과별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1명, 101명 이상인 경우 2명) ○ 추천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요 건</th> </tr> </thead> <tbody> <tr> <td>졸업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td> </tr> <tr> <td>재학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일 현재 3학년 1학기 학사과정 이수자로 공사에서 정한 일자에 신규자 양성교육 및 견습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추천당시까지 소속학과(전학년)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이내인 자 ※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추천 불가 </td> </tr> <tr> <td>전학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생은 편입전후의 학교 성적을 편입전후 소속학과 학생수로 비례·통산(가중평균) ■ 전학석차 산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편입 전 학교</th> <th style="width: 20%;">편입 후 학교</th> <th style="width: 40%;">통산성적</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석 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8%</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9%</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 통산성적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td> </tr> </tbody> </table>	구 분	요 건	졸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일 현재 3학년 1학기 학사과정 이수자로 공사에서 정한 일자에 신규자 양성교육 및 견습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추천당시까지 소속학과(전학년)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이내인 자 ※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추천 불가 	전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생은 편입전후의 학교 성적을 편입전후 소속학과 학생수로 비례·통산(가중평균) ■ 전학석차 산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편입 전 학교</th> <th style="width: 20%;">편입 후 학교</th> <th style="width: 40%;">통산성적</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석 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8%</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9%</td> </tr> </tbody> </table>	구 분	편입 전 학교	편입 후 학교	통산성적	학생수	200	600	800	석 차	상위 12%	상위 8%	상위 9%	◎ 통산성적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구 분	요 건																					
	졸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일 현재 3학년 1학기 학사과정 이수자로 공사에서 정한 일자에 신규자 양성교육 및 견습근무를 할 수 있는 자 ■ 추천당시까지 소속학과(전학년)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이내인 자 ※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을 이수해야 하므로 추천 불가 																					
전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학생은 편입전후의 학교 성적을 편입전후 소속학과 학생수로 비례·통산(가중평균) ■ 전학석차 산출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편입 전 학교</th> <th style="width: 20%;">편입 후 학교</th> <th style="width: 40%;">통산성적</th> </tr> </thead> <tbody> <tr> <td>학생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td> <td style="text-align: center;">800</td> </tr> <tr> <td>석 차</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12%</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8%</td> <td style="text-align: center;">상위 9%</td> </tr> </tbody> </table>	구 분	편입 전 학교	편입 후 학교	통산성적	학생수	200	600	800	석 차	상위 12%	상위 8%	상위 9%										
구 분	편입 전 학교	편입 후 학교	통산성적																				
학생수	200	600	800																				
석 차	상위 12%	상위 8%	상위 9%																				
◎ 통산성적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II

시험단계별 안내사항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4. 18. 09:00 ~ 4. 25. 18:00까지 (8일간)

나. 접 수 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채용홈페이지(<http://www.dtro.or.kr>)

다. 접수방법 : 대구도시철도공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라. 작성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에 맞춰 작성

○ 1인 1분야만 응시가능하며, 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 사진등록

○ 응시원서에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 응시원서에 등록하는 사진파일(JPEG형식) 규격은 가로3cm*세로4cm이상이며,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정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고,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원서접수 기간 중 서류심사 구비서류 제출

○ 대 상 : 도시철도 경력직 지원자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제출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우편접수는 2017. 4.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직접방문시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 지참(등기우편 제출시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 동봉)

○ 제 출 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본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총무인사부)

[기능인재 추천채용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방법]

① 채용홈페이지 접속ID 요청(학교담당자)

- 접속ID 요청 기간 : 2017. 3. 16 ~ 4. 14
- 접속ID 요청 메일 주소 : recruit@dtro.or.kr

② 접속ID로 채용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학교담당자)

③ 관련서류 제출

- 서류제출 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서류제출 기간 : 2017. 4. 18 ~ 4. 25(우편접수는 2017. 4.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본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총무인사부)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학교별	○ 2017년 기능인재 추천현황표
추천대상자별	○ 기능인재 추천서 ○ 성적증명서(석차비율 기재),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취업가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

④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응시 가능(불합격시 별도 통보)

2. 경력직 서류심사

가. 대 상 : 도시철도 경력직 지원자

나. 심사방법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등에 대해 심사

- 심사항목 : 경력(40%), 자기소개서(50%), 보유자격증(10%)
- ※ 직종별 보유자격증 가산점수 : 기사이상 10%, 산업기사 7%, 기능사 5%
- ※ 직종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붙임 참고

다.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 : 채용인원의 5배수

라.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 5. 11(목)

-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은 홈페이지 공고, 문자메시지 및 유선통보 병행
-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도시철도 경력직 분야는 필기시험 미 실시

3. 필기시험

가. 필기시험 일정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기시험 시행일(시간)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2017. 5. 8(월)	2017. 5. 14(일) 10:00 ~ 11:40 ※ 09:00까지 입실 완료	2017. 5. 22(월)

- 필기시험 응시자는 수험표(출력물)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수험표는 필기시험 장소공고 이후 채용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분야별·직종별로 채용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며,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채용인원에 5명을 더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나. 시험과목

직 종	시험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전공과목) (200점, 40문항)
사 무	직업기초능력평가 (200점, 40문항) 한국사 (100점, 20문항)	행정학개론, 경영학개론, 회계학개론, 법학개론, 전산학개론, 교통공학 중 택1
차량검수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차량운영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교통공학,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중 택1
전 기		전기일반
기 계		기계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신 호		철도신호일반,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통 신		통신일반
전 자		전자일반

-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전형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장애인 분야의 시험과목은 응시직종별 시험과목과 동일합니다.
- 기능인재 분야는 선택과목(전공과목) 시험을 면제합니다.(필수과목만 시행)
- 합격자는 매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가산대상점수를 합산한 세 과목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전 직종의 선택과목(전공과목)은 조정점수제를 시행합니다.

4. 필기시험시 가산특전

가. 가산대상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대상자	자격등급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사가 정하는 해당분야에 응시하는 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각 과목별 만점의 5%
	산업기사, 기능사	각 과목별 만점의 3%
사무분야에 응시하는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각 과목별 만점의 5%
	공공기록물관리전문요원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각 과목별 만점의 5%
	컴퓨터활용능력1급	각 과목별 만점의 3%

※ 직종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붙임 참고

○ 취업지원 대상자

가 산 대 상 자	가산비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각 과목별 만점의 5~10%

나. 가산방법

- 가산대상자 중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유효한 자격증 소지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만 적용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가산점과 취업지원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하며, 자격증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가산특전란에 표기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의 가점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표기된 가점을 적용하며, 가점대상자의 합격률은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5. 서류제출 및 심사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경력직, 기능인재 제외)

나. 제출일정

서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7. 5. 23 ~ 5. 25 18:00까지 (3일간)	2017. 5. 29(월)

○ 서류심사 불합격자는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17. 3. 15)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군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현역복무자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 성적증명서 사본 ※ 2015. 3. 15 ~ 2017. 4. 25 취득한 성적에 한함.	공개경쟁분야
자격증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해당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발행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 서류	해당자

※ 직접방문시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 지참(등기우편 제출시 자격증 및 증명서 원본 동봉)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처 :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총무인사부)

※ 우편접수는 2017. 5. 25(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불합격대상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6.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가.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나. 기 간 : 2017. 6. 1 ~ 6. 2

다. 장 소 : 대구도시철도공사 본사 강당(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라. 결과처리 : 인성검사 부적격자 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시 취업지원가점은 필기시험시 적용기준과 동일

마. 일정공지 : 개인별 시험시간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

7. 최종합격자 발표

가. 일 자 : 2017. 6. 8(목)

나. 기 타 :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해 최종 임용

※ 차량검수, 차량운영, 신호직종은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 적용

※ 신호직종은 신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 처리

Ⅲ 기타 유의사항

1.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채용전형 도입으로 필기시험과목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포함되었으니 채용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시험에 가산되는 자격증, 취업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착오기재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 되니 확인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합격자 중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에 의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예비후보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합니다.
4. 추후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5.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지원을 5. 8(월)까지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시험일정 등 모집공고 내용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dtro.or.kr>) 또는 총무인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40-2172 ~ 2174, 2176)

< 붙임자료 >

1. 응시 결격사유
2. 필기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3. 신체검사기준(“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기준”)

응시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2조】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어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직 종	자격증 종류
사 무	교통, 대기환경, 사무자동화,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컴퓨터시스템응용 ※ 공공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 기사수준 가점부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산업기사수준 가점부여
차량검수	공조냉동기계,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기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메카트로닉스, 비파괴검사, 산업계측제어, 산업기계설비, 산업안전, 생산자동화, 소방설비(기계), 소방설비(전기), 연삭, 열처리, 용접, 자기비파괴검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기기, 전자부품장착, 전자응용, 정밀측정,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천장크레인운전, 철도신호, 철도운송, 철도전기신호,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초음파비파괴검사, 치공구설계,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특수용접, 판금제관
차량운영	기계, 기계정비, 기계가공조립, 산업계측제어, 산업안전,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철도신호, 철도운송, 철도전기신호,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기사수준 가점부여
전 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자, 전자기기,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기 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안전, 대기관리, 대기환경, 산업계측제어, 산업안전, 소방, 소방설비(전기), 소방설비(기계), 승강기, 일반기계, 에너지관리, 환경
신 호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계측제어, 산업안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산업, 전자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컴퓨터시스템응용
통 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안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산업, 전자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컴퓨터시스템응용
전 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계측제어, 산업안전, 임베디드,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기기, 전자산업, 전자응용, 전파전자통신,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보안,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설비, 컴퓨터시스템응용

신체검사 기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 라.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구강·인후기관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 협착

3. 치아 계통

- 가. 아래턱관절 강직(強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礙)
- 라. 동맥류
- 마. 유착성 심낭염
- 바. 관상동맥질환
-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7. 생식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 다. 재생불량성 빈혈
-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 마. 진성 적혈구증가증
-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 2) 외상성 신경질환
 - 3) 말초신경질환
 -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더라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가. 일반 결함	1) 신체 각 장기 및 각 부위의 악성종양 2) 중증인 고혈압증(수축기 혈압 180mmHg 이상이고, 확장기 혈압 110mmHg 이상인 경우) 3) 이 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법정 감염병 중 직접 접촉, 호흡기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
나. 코·구강·인후 계통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언어장애나 호흡에 장애를 가져오는 코·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다. 피부 질환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만성 피부질환자 및 한센병 환자
라. 흉부 질환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2)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폐질환,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3)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마. 순환기 계통	1) 심부전증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분당 150회 이상)이나 기질성 부정맥 3) 심한 방실전도장애 4) 심한 동맥류 5) 유착성 심낭염 6) 폐성심 7)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바. 소화기 계통	1)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종대 2) 간경변증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만성 활동성 간염 3) 거대결장, 계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난치인 경우
사. 생식이나 비뇨기 계통	1) 만성 신장염 2) 중증 요실금 3) 만성 신우염 4) 고도의 수신증이나 농신증 5) 활동성 신결핵이나 생식기 결핵 6) 고도의 요도협착 7)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양측성 신결석 및 요관결석 8) 진행성 신기능장애를 동반한 만성신증후군

검사항목	불합격 기준(최초검사)
아. 내분비 계통	1) 중증의 갑상샘 기능 이상 2)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3) 애디슨병 4) 그 밖에 쿠싱증후군 등 뇌하수체의 이상에서 오는 질환 5) 중증인 당뇨병(식전 혈당 140 이상) 및 중증의 대사질환(통풍 등)
자. 혈액이나 조혈 계통	1) 혈우병 2)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3) 중증의 재생불능성 빈혈 4)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 5) 진성적혈구 과다증 6) 백혈병
차. 신경 계통	1) 다리·머리·척추 등 그 밖에 이상으로 앉아 있거나 걷지 못하는 경우 2)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말초신경질환 4) 두개골 이상, 뇌 이상이나 뇌 순환장애로 인한 후유증(신경이나 신체증상)이 남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뇌 및 척추종양, 뇌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6)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7)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8)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 실조증, 다발성 경화증)
카. 사지	1) 손의 필기능력과 두 손의 악력이 없는 경우 2) 난치의 뼈·관절 질환이나 기형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경우(운전업무에만 해당한다)
타. 귀	귀의 청력이 500Hz, 1000Hz, 2000Hz에서 측정하여 측정치의 산술평균이 두 귀 모두 40dB 이상인 경우
파. 눈	1)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5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3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8 이하인 경우(다만,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야의 협착이 1/3 이상인 경우 3)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4) 안구 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5) 색각이상(색약 및 색맹)
하. 정신 계통	1)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2)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3)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 4)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 등 5) 뇌전증 6) 수면장애(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발작, 몽유병, 수면 이상증 등)이나 공황장애